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2
2. 농어촌정비법 (개정).....	3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	4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5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6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7
7. 스포츠기본법 (제정).....	9
8. 모자보건법 (개정).....	11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3
1.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14
2.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15
3.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16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7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 [일부개정 `21. 12. 7. 시행 `22. 6. 8.]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044-201-4253

■ 개정이유

- 성장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은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

농어촌정비법

2 [일부개정 `21. 11. 30. 시행 `22. 6. 1.]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농업의 현대화, 생산력 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중요한 시설임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음.
- 현재 지자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단순 서류철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설중복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시설설치 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안전

관리 미비, 가뭄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수질 오염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시설 설치·관리·운영상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지자체가 시설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구축·운영 주체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 예산 절감, 시설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증대,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공급량 및 물 부족 현황 파악 등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 [일부개정 `21. 11. 30. 시행 `22. 6. 1.]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044-200-530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 12. 7. 시행 `22. 6. 8.]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044-200-493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일부개정 `21. 12. 7. 및 시행 `22. 6. 8.]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경영 지도 사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한편,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학교에 근접한 경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일부개정 `22. 6. 10. 시행 `22. 6. 10.]

소관부서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53

■ 개정이유

- 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적인 인공증식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 나.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제3호).
- 다.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몰수 근거를 마련함(제68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신설)

스포츠기본법

7 [제정 `22. 5. 6. 시행 `22. 5. 6.]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2

제정이유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한바,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제4조).
-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17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18조).
- 사.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제20조).
- 아.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제22조).
- 자.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 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24조).
- 차.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5조).
- 카.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6조).
- 타.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제27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모자보건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편, 산후조리도우미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령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음.

- 이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 또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 그 밖에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결일 `22. 6. 9.]

■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청구수리 완료 후 2022년 1월 10일 울산광역시장의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2022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청구와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022년 1월 27일 백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를 통합 ·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돌봄아동, 온종일 아동돌봄, 온종일 아동돌봄시설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 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다.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5조)
- 라. 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6조)
- 마.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 (안 제7조)
- 바. 돌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 사. 돌봄사업수행과 관련한 연계 · 협력을 위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규정

(안 제9조)

아. 돌봄사업을 위한 심의·자문을 위해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 (안 제10조)

2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결일 `22. 6. 21.]

제정이유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한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 연합회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사회단체 연합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제정이유

「 시도경제협의회규정 」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역경제협의회 목적 및 기능을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을 명시 (안 제3조~제5조)
- 다. 회의의 개최, 의안의 제출과 배부,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제10조)
- 라. 지역경제협의회 상정 의안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명시 (안 제12조)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의견22-0176] 강원도 철원군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 가.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에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제1호), 예산의 심의·확정(제2호), 결산의 승인(제3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인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석’의 의미를 물리적 공간으로써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물리적인 회의장이 아닌 회의에의 참석, 즉 심의? 표결 등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절차에 참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출석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서 표결방식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표결방식이나 투표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의사자율권에 해당하여 입법형성의 자유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따른 출석의 의미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 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에 대한 사항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재량에 따라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 및 의견 진술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회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재난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고 및 의견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62조 관련)

[의견22-0175] 전라북도 군산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 가.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57조제3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57조제3항에서는 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제1항), 그러한 경우에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불신임 의결의 요건을 갖추어야만(제2항)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서 불신임 의결 외에 의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별도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방의회의 대표자로서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방의회 의장의 신분을 2년의 임기동안 고도로 보장하여 의장의 직무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윤리성이나 성실성, 지역주민의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신임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신임 의결을 통해서만 의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신임 의결 외에 의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두려면 「지방자치법」에 직접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3

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22-0125] 경상북도 경산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이하 “사업비지원”이라 한다)하는 사무가 경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업비지원 사무가 경산시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법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문언상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재원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법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외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단체(이하 “미등록단체”라 한다)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자원봉사법 제4조 책무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미등록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경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자원봉사법 제4조의 책무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비 지원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산시가 미등록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는 경산시의 재정 상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경산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지 등을 귀 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 제17조 (생략)